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이혼 신청하고 7개월이 지나도 이혼판결 무소식인데

〈문〉 결혼생활 30년을 지내고 이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법정에 직접 등록비를 내고 서류 접수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답〉 미국에서의 이혼은 가정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법적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따르는 법적 절차와 서류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혼 신청 서면 법원에 접수시키면 자동으로 이혼 판결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귀하가 법원에 등록비를 내고 접수했다는 서류는 이혼 소장(Summons)과 이혼 신청서(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이혼 소장과 신청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혼은 상대방 배

우자가 이혼 서류를 송달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결문과 함께 원료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송달 과정이나 판결 과정은 가정법원이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신청한 개인이 단계별로 요구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법적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판사 앞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것 외에는, 가정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양식을 개인이 밟고 완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첫째, 배우자에게 합법적인 송달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Proof of Service)를 준비해야 하며, 둘째, 송달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송달 증명서가 갖추어지면, 양 당사자간에 서명, 공증된 합의이혼 판결문과 이에 함께 첨부되는 서류 양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양식은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문 불법체류자와 결혼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은

〈문〉 결혼할 사람이 현재 불법체류 신분입니다. 사람도 좋고 생활기반도 있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혹시 영주권 때문에 결혼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귀하는 다음의 두 가지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혼 전에 혼전 합의서(Prenuptial Agreement)를 작성하여 귀하의 재산과 수입을 혼인 후에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귀하가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부채나 결혼 중에 배

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에 대하여 부부 공동책임이 없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만약 혼인 이후에 영주권이 혼인의 목적이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 당사자간에 사실적으로 성립된 혼인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소송입니다. 귀하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기결혼에 근거하여 혼인 무효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미혼모가 낳은 아이, 생부의 동의없이 입양 가능한가

〈문〉 저는 여자 친구와 사귀는 가운데 여자 친구가 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하던 차에 시간이 흘러, 유산을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전 여자 친구는 딸을 낳아서 독단적으로 입양수속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친권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답〉 귀하는 서둘러 법원에 귀하가 아이의 생부임을 밝히는 절차(Establishment of Parental Relationship)를 신청함과 동시에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갖고 아이의 생부가 양육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 미혼모 단독으로 친권을 포

기하고 아이를 입양시키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양이 아이의 권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은 아이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부모에게 이전하는 판결을 내리며, 동시에 생부가 아이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단 아이의 출생시 아이의 생부가 자신이 생부임을 증명하고 또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때에는 미혼모 단독의 결정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은 생부가 부모로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하기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생부의 친권을 소멸시키고 입양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염두
폐지입니다.
이민·법률·부
동산·세금·노
동문제등에 관
해 질문이 있으
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
에게 서면질의
를 해주시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
번호를 적어주
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서신회
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
보내실 주
소: The Korea
Times ·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